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현찬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434

발의연월일 : 2016년 10월 31일
발 의 자 : 이현찬 의원(1명)
찬 성 자 : 우창윤, 김창수, 오봉수, 김제리, 김광수(노원), 우미경, 장흥순, 강성언, 김구현 의원 (9명)

1. 제안이유

현행 조례 중 특별회계 세출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, 인용조문의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인용조문(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)의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함.(안 제1조 및 제2조제2호)

나. 특별회계 세출조항을 관련 상위법(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)에 맞게 정비함.(안 제5조제5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 :

(1) 신구조문대비표 : 〔별첨 1〕

(2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 없음

(3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「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」 제12조”를 “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2조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”을 “국가 또는 시·도의 보조금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및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첨 1]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**「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**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**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**----------.
제2조(정의) (생 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수질개선사업"이란 법 제13조제1항 및 **「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」 제12조**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.	2. ---------- **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2조**----------.
제4조(세입) ① (생 략)	제4조(세입) ① (현행과 같음)
1. 국가의 보조금 및 **지방양여금**	1. 국가 **또는 시·도의 보조금**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세출) **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** **1.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연구용역 등에 드는 비용** **2.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사업에 드는 비용** **3.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** **4.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「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**	제5조(세출) **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및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.**